

제22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0년도 제3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. 12. 30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0년도 제3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47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12. 29(화)
- 라. 회부일자 : 2020. 12. 29(화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추경예산 규모

가.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최종예산	기 정 액					제3회추경(안) (명시이월)
		소 계	당초예산	제1회추경	제2회추경	간주처리	
계	754,298,839	754,298,839	527,951,983	27,063,159	25,365,517	173,918,180	- <51,617,791>
일반회계	739,811,732	739,811,732	515,105,346	26,996,185	23,969,075	173,741,126	- <51,617,791>
특별회계	14,487,107	14,487,107	12,846,637	66,974	1,396,442	177,054	-
의료급여	607,560	607,560	447,842	-	46,566	113,152	-
주민소득	889,881	889,881	461,580	-	428,301	-	-
주 차 장	12,989,666	12,989,666	11,937,215	66,974	921,575	63,902	-

※ 세출규모 변동은 없음

나. 명시이월 현황

- 코로나19 대응 복지시설 방역키트 지원 등 64개 사업 51,617,791천원

부서명	세부사업명	2020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
			계	교부세(금)	국시비 보조금	구비
합 계 : 17개 부서 / 64건		66,771,890	51,617,791	7,336,741	23,892,786	20,388,264
어르신장애인과 (3건/418,201천원)	코로나19 대응 복지시설 방역키트 지원	12,000	12,000	12,000	0	
	독산1동분소 보건지소· 데이케어센터 설치(병설형)	300,000	300,000	0	300,000	
	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	2,179,847	106,201	0	0	106,201
여성가족과 (6건/3,888,007천원)	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어린이집 방역 지원(방역키트)	223,846	14,400	14,400	0	
	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	500,000	456,447	0	456,447	
	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	3,060,000	3,054,024	0	3,054,024	
	지혜어린이집 국공립전환	188,000	188,000	0	188,000	
	독산롯데캐슬 국공립전환	130,000	130,000	0	130,000	
	금천구 가족센터 건립	4,542,450	45,136	0	0	45,136
	아동청년과 (2건/4,800,726천원)	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	4,048,000	4,040,326	0	0
	청년활동전용공간 「금천청년꿈터」 조성	998,000	760,400	0	0	760,400
기획예산과 (1건/40,540천원)	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	57,000	40,540	40,540	0	
도시계획과 (2건/269,618천원)	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	300,000	138,200	0	67,718	70,482
	가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	360,000	131,418	0	65,643	65,775
건축과 (1건/50,000천원)	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	50,000	50,000	0	50,000	
공원녹지과 (5건/14,724,191천원)	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	1,387,000	574,191	574,191	0	
	가산동 생활권 공원조성	9,750,000	9,750,000	0	0	9,750,000
	꾸러기·소망어린이공원 재조성	500,000	500,000	500,000	0	
	안양천 테마풍경길 조성	1,200,000	700,000	700,000	0	

부서명	세부사업명	2020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
			계	교부세(금)	국시비 보조금	구비
	호암늘솔길 연장사업	3,310,000	3,200,000	3,200,000	0	
도로과 (2건/1,505,858천원)	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	1,477,800	1,462,662	0	628,231	834,431
	신속한 제설대책	158,341	43,196	0	19,000	24,196
행정지원과 (2건/562,820천원)	효율적인 청사관리(방역키트)	119,437	22,000	22,000	0	
	생활치료센터 운영	540,820	540,820	60,000	480,820	
문화체육과 (7건/3,170,776천원)	구립합창단 운영	64,330	10,500	0	0	10,500
	금천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	3,400,000	2,501,656	1,200,000	0	1,301,656
	공공미술 프로젝트	400,000	400,000	0	400,000	
	코로나19 대응 문화체육시설 방역키트 지원	29,600	29,600	29,600	0	
	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	17,020	17,020	0	0	17,020
	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독서환경 구현	170,000	135,000	0	0	135,000
	금천 제3다목적 체육센터 건립	100,000	77,000	0	77,000	
마을자치과 (9건/1,329,600천원)	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	179,000	179,000	0	179,000	
	코로나19 대응 방역키트 지원	22,000	22,000	22,000	0	
	가산동주민센터 외부공간 증축 및 리모델링	100,000	100,000	100,000		
	시흥2동 마을활력소 조성	189,000	135,300	0	135,300	
	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	701,869	22,100	0	22,100	
	자치회관 운영	106,700	102,250	100,000	2,250	
	생활안전 CCTV 설치	700,000	700,000	700,000	0	
	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	160,000	18,300	0	18,300	
	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	245,444	50,650	0	50,650	
교육지원과 (5건/1,856,528천원)	금천형 과학관 조성 운영	845,425	845,425	0	0	845,425
	나래품 방과후학교 운영	66,000	21,000	0	21,000	

부서명	세부사업명	2020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
			계	교부세(금)	국시비 보조금	구비
	금천 마을돌봄교실 운영	60,000	54,632	0	40,000	14,632
	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	900,000	900,000		900,000	
	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	327,981	35,471	0	35,471	
지역경제과 (8건/15,296,189천원)	독산동 맛나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	366,000	122,200	0	73,520	48,680
	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	331,000	330,000	0	199,200	130,800
지역경제과 (8건/15,296,189천원)	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	2,576,000	1,625,924	0	1,412,371	213,553
	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(시설현대화)	8,485,240	8,457,700	0	7,128,240	1,329,460
	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(주차환경개선)	4,505,553	4,371,098	0	3,784,665	586,433
	남문시장 홍보조형물 설치	153,000	21,019	0	18,217	2,802
	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	467,654	338,248	0	338,248	
	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	30,000	30,000	0	30,000	
도시재생과 (4건/3,063,890천원)	생활밀착형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	400,000	334,731	0	334,731	
	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	260,000	260,000	0	260,000	
	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	3,411,340	1,889,409	0	1,855,865	33,544
	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	599,100	579,750	0	579,750	
청소행정과 (1건/62,010천원)	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	273,348	62,010	62,010	0	
보건의료과 (3건/372,437천원)	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	200,000	180,877	0	180,877	
	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·운영 지원	100,000	100,000	0	100,000	
	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	91,560	91,560	0	73,248	18,312
건강증진과 (3건/206,400천원)	국가예방접종실사(고위험군A형간염)	41,180	10,000	0	6,500	3,500
	의료수급권자, 장애인연금및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	176,400	176,400	0	176,400	
	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 (코로나19 환자 이송 등 지원)	127,605	20,000	0	20,000	

다. 명시이월(부서별 현황) : 17개부서 64건 51,617,791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건수	이월액	연번	부서명	건수	이월액
계		64	51,617,791				
1	어르신 장애인과	3	418,201	10	문화체육과	7	3,170,776
2	여성가족과	6	3,888,007	11	마을자치과	9	1,329,600
3	아동청년과	2	4,800,726	12	교육지원과	5	1,856,528
4	기획예산과	1	40,540	13	지역경제과	8	15,296,189
5	도시계획과	2	269,618	14	도시재생과	4	3,063,890
6	건축과	1	50,000	15	청소행정과	1	62,010
7	공원녹지과	5	14,724,191	16	보건의료과	3	372,437
8	도로과	2	1,505,858	17	건강증진과	3	206,400
9	행정지원과	2	562,820				

4. 검토의견

- 2020년 제3회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
예산 최종 규모는 7,542억 9,883만 9천원으로
당초예산 5,279억 5,198만원과
제1회 추경 270억 6,316만원,
제2회 추경 253억 6,551만원,
간주처리 1,739억 1,818만원임.

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액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며

금회 제출된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

총 64건 516억 1,779만 1천원임.

이중 행정재경위 소관 명시이월액은 30건 75억 3,910만 1천원이며

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

‘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’ 등

6건 5억 7,883만 7천원임.

가. 보건의료과 명시이월 : 3건 372,437천 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2020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비고 (사유)	
			계	특별 교부세(금)	보조금		구비
합계 (3건)		391,560	372,437		354,125	18,312	
1	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	200,000	180,877		180,877		[집행시기 미도래] 기존 감염병 관리실 리모 델링 공사비(감염병 안전 공간 건축, 기계, 통신, 소방공사,압설치 등) `20. 9.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 된 사업으로, `20.10.13. 구축계획 변경 후 설계내 역 변경하여전체일정 지 연으로 연도 내 지출 불 가(`21. 1. 준공 및 `21. 2. 집행완료 예정)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2020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	비고 (사유)
			계	특별 교부세(금)	보조금	구비	
2	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	100,000	100,000		100,000		[집행시기 미도래] 기존 감염병 관리실 리모 델링 공사비 (감염병 안전공간 건축, 기계, 통신, 소방공사, 음압설치 등) `20. 9. 국시비 보조 금이 교부된 사업으로, `20.10.13. 구축계획 변 경 후 설계내역 변경하여 전체일정 지연으로 연도 내 지출 불가(`21. 1. 준 공 및 `21. 2. 집행완료 예정)
3	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 업	91,560	91,560		73,248	18,312	[집행시기 미도래]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금년 대상인 학생(초등4학년) 및 아동 구강검진을 내년에 확대 시행코자 함(`21. 3. ~ `21. 12. 집행 예정)

나. 건강증진과 명시이월 : 3건 206,4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2020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	비고 (사유)
			계	특 교부세(금)	별 보조금	구 비	
합 계 (3건)		345,185	206,400	3,000	199,900	3,500	
1	국가예방접종실시(고위험군 A형감염)	41,180	10,000	3,000	3,500	3,500	[연도 내 지출 불가] 고위험군 A형간염접종 대상자의 2차 예방 접종 기간이 2020~2021년에 걸쳐 있어 예산이월이 불가피함('21. 1. ~ 12. 집행 예정)
2	의료수급권자, 장애인 연금 및 수당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	176,400	176,400		176,400		[연도 내 지출 불가]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기간이 2020~2021년에 걸쳐 있어 예산이월이 불가피함('21. 1. ~ 5. 집행 예정)
3	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	127,605	20,000		20,000		[연도 내 지출 불가]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확진자 지속발생에 따른 환자 이송 및 간담회 실시 보조금이 '20. 12. 22. 교부 통보되어 연내 지출 불가('21. 1. ~ 5. 집행예정)

마. 검토결과

명시이월은 「지방재정법」 제7조¹⁾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제1항²⁾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사유를 밝혀 미리 구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로써

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(안) 예산총칙 제5조(명시이월비)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고 구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.

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,
보건의료과 3건, 건강증진과 3건 총 6건 중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등 3건은 특별교부금이 10월에서 12월중 교부되어 사업 추진 기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며 국가예방접종실시(고위험군A형 감염) 등 2건은 사업기간이 진행 중으로 부득이한 이월이며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금년 대상인 학생(초등4학년) 및 아동 구강검진을 내년에 확대 시행하고자 이월하는 것으로 「지방재정법」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관련 법령 1부.

-
- 1) 제7조(회계연도 독립의 원칙)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
 - 2) 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7조(회계연도 독립의 원칙)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수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

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3. 공익·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